



[인허가보증보험]

(주)메디컬코리아서비스 고객님을 위한 보증보험 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서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자신을 위한 보험계약인 **신용보험**과 다른 상품입니다.

구분	보증보험	신용보험
계약자	채무자(타인을 위한 계약)	채권자(자신을 위한 계약)
피보험자	채권자	채권자
계약형태	개별계약	(주로) 단체계약

▣ 사례를 중심으로 본 민원·분쟁·상담이 많은 사항

유형 1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고자 하나, 회사가 환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며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로부터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 [주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 환급을 위한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회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2

피보험자는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 전에 계약자를 상대로 가압류·압류 등 법적조치를 한 사실에 대하여 계약자가 회사의 구상절차에 대하여 민원을 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 발생 또는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보험회사와 채무 관련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주의!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시] 보험기간을 100일로 하여 보험료 10만원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를 가정

(1) 계약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 시 이미 지난 보험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경과보험료(최저보험료가 경과보험료보다 클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리는 상품의 경우

① 경과보험료가 5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기간이 경과(보험기간이 50일 경과)

· **납입보험료(10만원) - 경과보험료(5만원) = 환급보험료(5만원)**

② 경과보험료가 5천원(최저보험료는 1만원이라고 가정)에 해당하는 보험기간이 경과

· **납입보험료(10만원) - 최저보험료(1만원) = 환급보험료(9만원)**

(2) 계약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는 상품의 경우

· **환급보험료 = 0원**

※ 위 예시는 보험료 환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회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예금자보호 관련 유의사항

보증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은 **보호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보증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 대상인 예금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구 분	보험회사	외부기관			
상담·민원	전화상담 (1670-7000)	손해보험협회	콜센터	02-3702-8500	
			인터넷 상담	https://consumer.knia.or.kr/consumer/center/counsel.do	
분쟁조정	누리집 (www.sgic.co.kr)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e-금융 민원센터	https://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콜센터	국번없이 1372	



이 설명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사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아래 사항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으로, 충분히 이해한 뒤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설명서

보증보험계약 중요내용

상 품 명	인허가보증보험	인 수 조 건	약정서
계 약 자	(주)메디컬코리아서비스	피 보 험 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험가입금액	₩100,000,000	보 험 료	₩170,250
보 험 기 간	2024.07.18 ~ 2025.07.17	분 납 기 간	해당사항 없음
보 증 내 용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보증금 보증		
특 별 약 관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모 집 자	서울보증보험(주) 양재지점 양재제일 주식회사대리점		
고 유 번 호			

※ **모집자의 업무범위**

-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회사와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회사는 서면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사항을 수령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계약전 알릴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회사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입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 ※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상기 모집자에 대한 주요정보는 「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및 약정서 등 중요내용

1. 보험계약자의 권리 · 의무

가. 청약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과 청약할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험(다만, 보험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은 청약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전화, 서면,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철회 신청서 및 확인서' 를 피보험자로부터 확인받아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 또는 발송하시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원하는 경우 아래 유선번호에 전화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9층 (도곡동, 캠프양재타워)

· 전화: 02-574-0021

(E-Mail: sgic155@sgic.co.kr)

나. 계약전 · 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할 때 청약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2)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보험계약의 취소·해지

(1)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기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 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 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는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에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3)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보험계약자의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보험료의 감액 청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2. 계약의 성립 및 보상범위 등

가. 계약의 성립·승낙절차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심사를 통해 승낙 여부를 결정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만일 회사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650조 제1항)

다. 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이나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동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승낙의 의미로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증권을 재교부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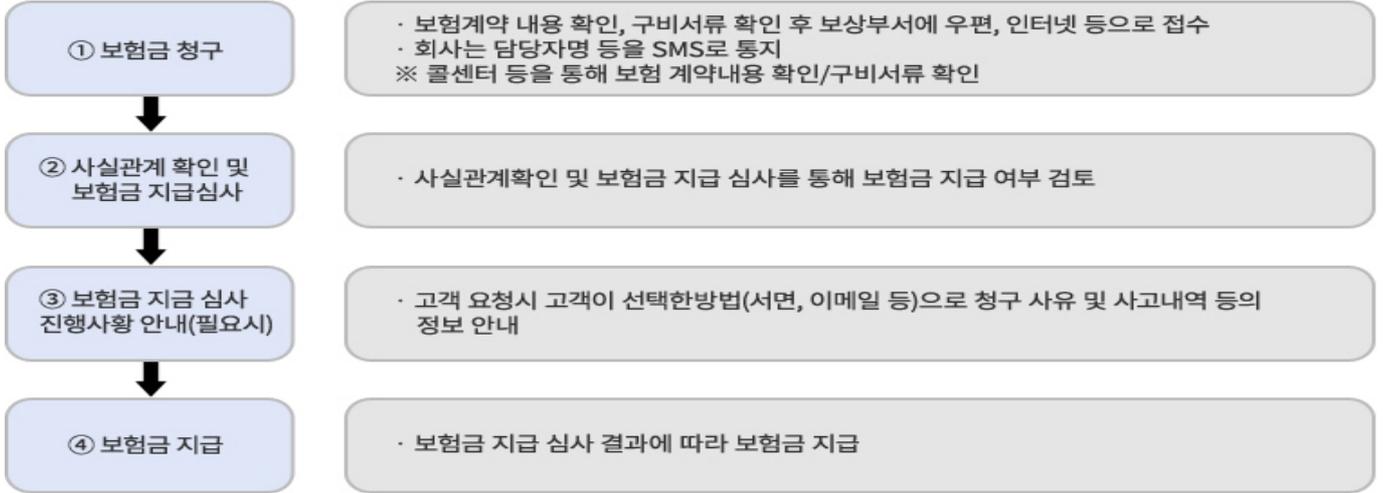


라. 보상하는 손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받은 '계약상 채무' 또는 '법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내란·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바. 보험금 지급 및 손실보상
회사는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보상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구상권 또는 대위권에 따라 지급보험금과 자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포함한 금원을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사. 보험료 환급

(1) 보험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남아있는 보험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이미 지난 보험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경과보험료(최저보험료가 경과보험료보다 클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경과보험료의 계산】 경과보험료는 인·허가조건에 따른 의무가 소멸하여 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보험계약자의 의무가 소멸한 날까지의 경과기간, 기타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보험료 환급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아.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자.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차. 사전구상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회사의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사전에 약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물을 환가하거나,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가.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나.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주계약 또는 보험증권 위·변조, 허위사고 등)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다. 주요민원사항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1. 보험료 환급 청구 관련(1)]

<사례> 발주자 B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 A는 공사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상품(보험기간 1년)에 가입하며 향후 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자로부터 이행완료 확인이 있어야 함을 설명했으나,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6개월만에 해지되자 이를 이유로 회사에 보험료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회사는 공사계약의 이행완료 내지는 보험사고 미발생에 대한 피보험자 B로부터의 확인이 없음을 이유로 보험료 환급불가를 통지하였고, 이에 보험계약자 A가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만일 피보험자 B로부터의 이행완료 확인(증빙서류)이 없다면, 향후 피보험자 B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A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보험계약자 A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험료 환급청구시 공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사실에 대한 피보험자 B의 확인을 받아야 함

[유형2. 보험료 환급 청구 관련(2)]

<사례> B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보험계약자 A는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위한 상품(보험기간 2년)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1년 만에 퇴직함을 이유로 잔여 보험기간에 상당한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환급사유관련 확인서(퇴직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자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피고용인의 배임행위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고용주의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보험계약의 효력'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중도퇴직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 B회사로부터 환급사유(퇴직 등)를 확인받아 등 증서를 제출하거나, 4대 보험 관련 자격상실일을 확인(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유형3. 보험금지급 안내 누락 및 지연 불만 관련]

<사례> 피보험자 B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보험계약자 A의 주소(A가 회사에 고지한 주소)로 '사실관계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보험계약자 A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못하였고, 보상심사결과 보험계약자 A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이후 보험계약자 A는 본인에게 별도 고지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회사는 보험금청구 접수시, 보험계약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관련사실을 안내하고 있는데, 만일 보험계약체결 이후 변경된 연락처(전화번호 및 주소 등)를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회사는 기존 연락처로 관련사실을 안내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회사에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 보험금청구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적시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유형4. 담보물 반환 관련]

<사례> 보험계약자 A는 상품에 가입하며 담보물로 정기예금을 제공하였고 이후 '보험기간'이 종료되자 동 담보물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회사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미경과되었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에 보험계약자 A가 즉시 담보물을 반환받지 못함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거나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청구사유가 없음을 확인받지 않는 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담보물을 반환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 A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담보물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험금청구사유가 없음에 대한 피보험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유형5. 법적조치 관련 민원]

<사례> 용역계약상 채권자(피보험자)인 B는 채무자(보험계약자)인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 전후에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가압류·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였는바, 보험계약자 A가 회사의 구상절차 진행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회사는 구상권 보전을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적으로 보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후에는 해당 보험금에 회사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구상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함

라. 분쟁조정절차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전화연락처, 누리집(QR Code 참조)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보험회사	외부기관			
상담 또는 민원 접수	전화상담 (1670-7000) 누리집 (https://sgic.co.kr)	손해보험협회	콜센터	02-3702-8500	
			인터넷상담	https://consumer.knia.or.kr/consumer/center/counsel.do	
분쟁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콜센터	국번없이 1372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상속인 신분증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거나, 피보험자에 대한 성년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상속인 신청서 필요서류와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바. 추가보험료 납입을 통한 청약안내

인수부점의 심사를 통해 산출된 보험계약자의 자기신용을 초과한 보험청약으로 신용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 차액, 선금, 하자, 지급, 물품대금 및 인·허가 중 선택요율 적용이 가능한 보험계약에 한하여 보험계약자의 선택으로 추가보험료 납부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보험료 산출시 유의사항

회사가 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평가하는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험기간 만기안내 등

보험기간 만기안내 및 안내장은 청약서에 기재하신 주소로 송부되오니,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자.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합니다.

4. 특별약관

별지참조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보험계약자 확인

번호	주요 설명 내용
1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에 관한 사항
2	청약철회, 보험료 감액청구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고지·통지의무 및 위반효과, 보험계약의 성립 및 해제·해지, 무효에 관한 사항
4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보장내역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환급(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6	예금자보호, 주요민원사항,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 등 기타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7	모집인 정보(성명, 소속, 지위, 연락처) 및 권한(보험료·고지의무 수령가능 여부), 보험 계약 체결단계(보험계약의 승낙·변경절차 등),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소멸시효 등 기타 유의사항
8	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를 통한 모집자의 주요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9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모집자 확인] 모집인 _____ 는(은)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주)메디컬코리아서비스 에 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설명·교부일자 : 20____.____.____. _____ (서명 또는 인)

[보험계약자 확인] 모집인 _____ (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 여부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일자 : 20____.____.____. _____ (서명 또는 인)